

본인확인	담당	책임자

고금 보관신탁계약서 [하나골드신탁(처분)]

위탁자와 수탁자는 아래와 같이 고금 보관신탁 계약을 체결합니다.

※ 뒷면의 고금 보관신탁계약서 내용을 반드시 확인하시고, 계약 조항 중 달리 작성하는 부분을 아래와 같이 정하고자 합니다.

※ 본 계약서는 2부를 작성하여 위탁자(고객)와 수탁자(은행)가 각 1부씩 보관하여야 합니다.

구분		내용						
계약일		계약명		계약번호				
제2조	제휴사업자							
제3조	(위탁자 겸) 수익자	주소 :						
		생년월일 :	성명 :	서명 또는 (인)				
제4조	신탁기간	년 월 일 ~ 제13조 제1항 각 호의 신탁종료사유가 발생한 날						
제14조	신탁보수	신탁고금의 중량		신탁보수				
		3.75g(1돈) 이상 ~ 37.5g(10돈) 이하		[]만원				
		37.5g 초과 ~ 100g 이하		[]만원				
		100g 초과		[]만원				
제18조	통지방법	☐ 등기우편 ☐ 팩시밀리(Fax) ☐ 전자우편(E-mail) ☐ 모바일						
별지 1	신탁고금 목록	번호	품목	수량(개)	중량(g)			
					보안봉투 식별번호			
		1						
		2						
위탁자		주소 :						
		생년월일 :	성명 :	서명 또는 (인)				
수탁자		수탁자는 위탁자에게 계약 내용이 표시되어 있는 고금 보관신탁계약서를 교부하는 것으로 위탁자의 위 신청에 동의하는 것으로 같음합니다.						
		(주) 하나은행						



위탁자 _____ (이하 “위탁자”라 한다) 및 수탁자로서 주식회사 하나은행(이하 “수탁자”라 한다)은 다음과 같이 고금 보관신탁계약(이하 “신탁계약”이라 한다)을 체결한다.

제 1 조(목적)

이 신탁의 목적은 위탁자가 별지 1. 기재 고금 등(이하 “신탁고금”이라 한다)을 수탁자에게 신탁(이하 “본건 신탁”이라 한다)하고, 수탁자는 신탁고금을 신탁계약에서 정하는 바에 따라 보관·관리하는 데 있다.

제 2 조(정의)

1. “감정매매계약”이라 함은 위탁자가 제후사업자에게 고금의 감정을 위탁하고, 위탁자가 그 감정 결과에 동의하는 경우 제후사업자가 위탁자로부터 고금을 매입하는 내용으로 위탁자와 제후사업자 사이에 체결되는 고금 등 감정·매입계약을 말한다.
2. “고금 등”이라 함은 위탁자가 소유하고 있는 조세특례제한법 제106조의3 제1항 및 동법 시행령 제106조의3 제1항의 금괴(덩어리)·골드바 등 원재료 상태에서 순도가 1000분의 995 이상인 금지금 및 기타 순금합금 제품 등 금 제품을 말한다.
3. “보안봉투”라 함은 수탁자가 제7조에 따라 신탁고금을 그 현상 그대로 제후사업자에게 인도하기 위하여 신탁고금을 수납하는 봉투로서, 제후사업자가 수탁자에게 제공한 것이며, 신탁고금을 넣고 보안테이프 등을 사용하여 봉인시 밀봉이 가능하되 봉인 해제시 재사용이 불가능하며, 외부에서 내용물의 식별이 불가능한 봉투 등 일체의 물건을 말한다.
4. “보안봉투(반환용)”이라 함은 제후사업자가 신탁고금이 수납된 보안봉투를 개봉하여 신탁고금에 대한 감정을 한 후 위탁자가 그 감정 결과에 동의하지 아니함에 따라 제후사업자가 수탁자에게 반환하기 위하여 신탁고금을 넣고 봉인한 새로운 보안봉투를 말한다.
5. “식별번호”라 함은 위탁자가 감정매매계약에 따라 제후사업자에게 감정을 위탁한 고금과 수탁자가 제7조에 따라 제후사업자에게 인도하여야 할 신탁고금의 동일성 여부를 확인하기 위하여, 제후사업자가 각 보안봉투마다 개별적으로 부여한 중복되지 않는 일련번호를 말한다.
6. “제후사업자”라 함은 _____ 을 말한다.

제 3 조(신탁고금의 신탁 및 수익자의 지정 등)

- ① 위탁자는 수익자의 이익을 위하여 신탁고금을 신탁계약에 따라 수탁자에게 신탁하고 수탁자는 이를 수탁한다.
- ② 위탁자는 신탁계약 체결 후 즉시 신탁고금을 수탁자에게 현실로 인도하여야 한다.
- ③ 수탁자는 위탁자로부터 신탁고금을 인도받음과 동시에 신탁고금의 품목, 수량, 중량 및 신탁고금을 수납할 보안봉투와 그 식별번호를 확인하고 별지 1. 기재 신탁고금 목록을 작성한다. 수탁자와 위탁자는 별지 2. 양식의 신탁고금 인수 확인서 3부를 작성하여 각자 기명날인 또는 서명한 후 각자 1부씩

보관하기로 하고, 나머지 1부는 신탁고금과 함께 보안봉투에 넣는다.

- ④ 수탁자는 보안봉투에 신탁고금과 신탁고금 인수 확인서를 넣은 후 제후사업자가 제공한 보안테이프를 사용하여 보안봉투를 봉인하여야 하고, 위탁자는 이를 확인 후 해당 보안봉투에 서명한다.
- ⑤ 위탁자는 위탁자가 본건 신탁 당시 신탁고금에 대한 소유권을 적법하고 유효하게 보유하고 있고, 신탁고금에 관하여 제한물권이 설정되어 있거나 압류, 가압류, 가처분 등 일체의 처분제한사유가 존재하지 않음을 확인 및 보증하며, 위 사항이 사실과 다를 경우 위탁자의 귀책사유로 인하여 발생하는 책임은 수탁자에게 귀책사유가 없는 한 위탁자가 부담한다.
- ⑥ 수탁자는 신탁고금을 인도받아 이를 보안봉투에 넣고 봉인하는 과정에서 수탁자에게 고의 또는 과실의 귀책사유가 없는 한 제후사업자로부터 제공받은 보안봉투, 식별번호, 보안테이프의 성능, 상태 등에 대하여 위탁자에게 어떠한 책임도 부담하지 않으며, 위탁자는 신탁계약의 체결로써 이에 동의한다.
- ⑦ 수탁자는 신탁고금에 관하여 제한물권이 설정되어 있는지 여부 또는 압류, 가압류, 가처분 등 일체의 처분제한사유가 있는지 여부를 확인하기 위하여 필요한 서류의 제공을 위탁자에게 요청할 수 있으며, 위탁자는 합리적인 사유가 없는 한 수탁자의 요청에 따라 해당 서류를 제공하여야 한다.
- ⑧ 본건 신탁의 수익자는 위탁자로 한다.

제 4 조(신탁기간)

신탁계약에 따른 신탁기간은 신탁계약 체결일로부터 제13조 제1항 각호의 신탁종료사유가 발생한 날까지의 기간으로 한다.

제 5 조(신탁재산)

신탁재산은 다음 각 호의 재산 및 재산권으로 구성된다.

1. 신탁고금
2. 신탁고금의 분실 등으로 인한 보험금
3. 제후사업자의 과실 등으로 인한 손해배상금
4. 그 밖의 위 각 호에 준하는 재산

제 6 조(신탁고금의 보관)

- ① 수탁자는 신탁재산을 다른 신탁재산 및 수탁자의 고유재산과 구분하여 보관·관리하여야 한다.
- ② 수탁자는 선량한 관리자의 주의의무로 신탁고금의 소유권을 유지하고 신탁사무를 처리한다.
- ③ 수탁자는 신탁고금 등을 넣고 봉인한 보안봉투를 제7조에 따라 제후사업자에게 인도하기 전까지 수탁자가 신탁고금을 인도받은 지점의 금고에 보관하고, 금(金)과 같은 귀중품 관리를 위해 필요한 통상의 조치를 하여야 한다.
- ④ 수탁자는 자신의 비용으로 신탁고금의 보관·관리에 필요한 통상적인 조치를 하되, 신탁고금의 중량 등을 고려하여 추가적인 조치가 필요하다고 판단하는 경우 그 추가적인 조치를 위하여 필요한 추가 비용을 위탁자에게 청구할 수 있고, 수탁자가 추가 비용을 대신 부담한 경우 위탁자는 수탁자가 위탁자



를 대신하여 부담한 추가 비용을 수탁자의 청구에 따라 수탁자에게 지급하여야 한다. 단, 수탁자는 신탁고금을 인도받아 그 중량을 확인한 후 추가적인 조치가 필요하다고 판단되는 경우 지체없이 위탁자에게 추가적인 조치의 필요성 및 그에 따른 추가 비용을 고지하여야 한다.

- ⑤ 위탁자가 감정매매계약에서 정한 바에 따라 신탁고금의 감정 결과에 동의하지 않아 제휴사업자가 신탁고금을 넣고 재봉인한 보안봉투(반환용)를 수탁자에게 반환하여 수탁자가 수령한 경우, 이를 위탁자에게 인도하기 전까지 본조에 따라 보관·관리하여야 한다.

제 7 조(위탁자 지시에 따른 신탁고금의 교부)

- ① 위탁자가 제휴사업자와 감정매매계약을 체결한 경우, 위탁자는 감정매매계약에 따라 신탁고금에 대한 감정을 제휴사업자에게 위탁하기 위하여 수탁자에게 신탁고금 등을 넣고 봉인한 보안봉투를 제휴사업자에게 교부할 것을 신탁계약의 체결로써 지시한다.
- ② 수탁자는 신탁고금 등을 넣고 봉인한 보안봉투를 제1항의 지시에 따라 제휴사업자에게 교부하기 위하여, 신탁고금의 보관장소(수탁자가 위탁자로부터 신탁고금을 인도받은 지점)에 방문한 제휴사업자에게 제휴사업자가 부여한 식별번호와 동일한 식별번호가 기재된 보안봉투를 현상 그대로 인도한다(단, 수탁자와 제휴사업자 사이에 보안봉투 교부 방법에 대하여 별도로 협의한 경우 수탁자는 해당 협의된 방법에 따라 제휴사업자에게 보안봉투를 교부할 수 있다). 수탁자는 제휴사업자가 부여한 식별번호와 동일한 식별번호가 기재된 보안봉투를 제휴사업자 또는 제휴사업자가 지정한 물류사업자에게 교부한 후부터 제휴사업자로부터 보안봉투(반환용)을 수령할 때까지는 운송, 감정 과정에서의 훼손, 분실, 멸실 등에 대하여 수탁자에게 귀책사유가 없는 경우 위탁자에게 책임을 부담하지 않으며, 위탁자는 신탁계약의 체결로써 이에 동의한다.
- ③ 제2항에 따른 교부와 동시에 수탁자는 제휴사업자와 별지 3.의 보안봉투 인수인계서를 2부 작성하여 각 1부씩 보관하고, 위탁자에게 교부 사실을 통지하기로 한다.

제 8 조(조세 및 비용)

신탁재산에 관한 제세공과금, 유지관리비, 등기·등록 비용, 보험료 등 신탁사무 처리에 필요한 제비용 및 신탁사무 처리에 있어서 수탁자의 고의나 과실 없이 발생한 손해는 위탁자가 부담한다.

제 9 조(수탁자의 선관주의의무 및 면책)

- ① 수탁자는 별도의 명시적인 합의가 없는 한 아래의 사항을 원인으로 발생하는 일체의 손해에 대해서는 수탁자의 고의 또는 과실의 귀책사유가 없는 한 책임을 지지 아니한다.
1. 신탁고금 고유의 결함, 성질로 인한 손해
 2. 신탁고금의 감정 과정에서 발생하는 손해
 3. 국가 공권력에 의한 몰수 및 강제집행에 의한 손해

4. 전쟁, 침략, 내전, 폭동 및 테러행위 등으로 인한 손해
 5. 핵 연료, 핵 폐기물, 또는 핵연료의 연소로부터 배출된 방사선의 전리, 또는 그로부터 배출된 방사능에 의한 오염 등으로 인한 손해
- ② 제1항에 명시된 사유가 아니더라도 수탁자는 신탁사무처리에 대하여 선관주의의무를 다하고, 수탁자에게 고의 또는 과실의 귀책사유가 없는 경우에는 위탁자, 수익자 또는 제3자에게 손해가 발생하더라도 그 책임을 지지 아니한다.

제 10 조(수탁자의 사임)

- ① 수탁자는 위탁자의 승낙을 받은 경우에 한하여 사임할 수 있다.
- ② 제1항에도 불구하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수탁자는 위탁자에게 2주일전 사전 서면통지를 함으로써 사임할 수 있다.
1. 위탁자가 본 계약상 의무를 위반하고, 수탁자가 그 시정을 요구하였음에도 14영업일 이내에 이를 시정하지 아니한 경우
 2. 신탁사무의 처리와 관련하여 수탁자를 상대로 소송이 제기된 경우로서 소송비용의 회수가 어려울 것으로 명백히 예상되는 경우

제 11 조(수탁자 변경)

- 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유가 발생한 경우 신탁계약에 따른 수탁자의 임무는 종료된다.
1. 수탁자가 파산선고를 받은 경우
 2. 수탁자가 합병 외의 사유로 해산한 경우
 3. 제10조에 따라 수탁자가 사임한 경우
- ② 제1항 각 호에서 정한 수탁자 임무 종료 사유가 발생한 경우 위탁자가 신수탁자를 선정한다.
- ③ 제1항 및 제2항에 따라 수탁자가 변경되는 경우 수탁자는 신수탁자에게 신탁계약과 관련된 신탁업무에 대해 차질 없이 인수인계 하여야 한다.

제 12 조(신탁계약의 해지)

- ① 수탁자는 수탁자의 귀책사유 없이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사유가 발생한 경우 해지일로부터 1영업일 전에 통지(제2항의 비용 등이 발생한 경우 이를 청구하겠다는 내용을 포함함)하고 신탁계약을 해지할 수 있다.
1. 신탁재산의 보관·관리가 불가능하거나 현저히 곤란한 경우
 2. 위탁자가 신탁계약에서 정한 의무를 이행하지 않아 신탁계약을 존속시키기 어렵다고 수탁자가 판단하여 위탁자에게 이를 통지하였으나 10일 이내에 해당 사실이 치유되지 아니한 경우
 3. 경제사정의 변화, 신탁재산의 멸실, 가치의 하락 기타 신탁의 목적 달성 또는 신탁사무의 수행이 불가능한 경우
- ② 제1항에 따라 신탁계약이 해지되는 경우 수탁자는 신탁계약의 해지와 관련된 제비용과 신탁보수, 기타 손해가 발생한 경우의 손해배상금은 위탁자에게 그 지급을 청구하거나 위탁자가 지급을 거절할 경우 신탁재산의 일부 또는 전부를 처분하여 그 지급에 충당할 수 있다.



제 13 조(신탁종료시의 신탁고금의 반환 등)

- ① 신탁계약에 따른 본건 신탁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종료한다.
 1. 제12조에 의하여 본건 신탁이 해지된 경우
 2. 본건 신탁의 목적을 달성하였거나 달성할 수 없게 된 경우
 3. 다음 각목 중 어느 하나의 사유가 발생한 경우
 - 가. 위탁자가 감정매매계약에서 정한 바에 따라 신탁고금의 감정 결과 및 매매에 동의한다는 의사를 제휴사업자에게 표시함으로써 위탁자와 제휴사업자 사이에 신탁고금에 대한 매매계약이 체결되고, 제휴사업자가 위탁자에게 매매대금을 지급하였다는 사실을 수탁자가 확인한 경우
 - 나. 위탁자가 감정매매계약에서 정한 바에 따라 신탁고금의 감정 결과 또는 매매에 동의하지 않거나 기타 사유로 감정매매계약이 해제되어 제휴사업자가 신탁고금이 수납된 보안봉투(반환용)를 수탁자에게 인도하여 수탁자가 이를 수령한 경우
 4. 기타 신탁법 등 신탁관계법규에서 정한 신탁의 종료사유에 해당하는 경우
- ② 위탁자가 감정매매계약에서 정한 바에 따라 신탁고금의 감정 결과 또는 매매에 동의하지 않거나 기타 사유로 감정매매계약이 해제되어 제휴사업자가 신탁고금을 넣은 보안봉투(반환용)를 수탁자에게 반환하여 수탁자가 이를 수령한 경우 수탁자는 제휴사업자와 별지 4.의 보안봉투(반환용) 인수인계서를 2부 작성하여 각 1부씩 보관하고, 보안봉투(반환용) 인수인계서 사본을 위탁자에게 교부하기로 한다.
- ③ 위탁자는 감정매매계약에서 정한 바에 따라 신탁고금의 감정 결과 및 매매에 동의 또는 부동의한다는 의사를 제휴사업자에게 표시한 경우 그 즉시 제휴사업자로 하여금 해당 사실을 수탁자에게 알리도록 하여야 한다.
- ④ 위탁자는 본건 신탁이 종료된 경우(제1항 제3호 가목에 따른 본건 신탁의 종료는 제외함) 지체없이 위탁자가 제3조 제2항에 따라 수탁자에게 신탁고금을 인도한 장소(수탁자의 지점에 방문하여 신탁고금을 수탁자로부터 반환받아야 하고, 수탁자는 위탁자가 방문하여 신탁고금의 반환을 요청한 경우 그 즉시 신탁고금을 위탁자에게 반환한다(수탁자가 제휴사업자로부터 신탁고금을 넣고 봉인한 보안봉투(반환용)를 반환받아 보관하고 있는 경우 해당 보안봉투(반환용)를 제휴사업자로부터 반환받은 그 상태로 위탁자에게 반환한다). 봉함에 따라 신탁고금이 위탁자에게 반환된 경우 수탁자와 위탁자는 별지 5. 양식의 신탁고금 반환 확인서 2부를 작성하여 각자 기명날인 또는 서명한 후 각자 1부씩 보관한다.
- ⑤ 제1항 제3호 가목에 따라 본건 신탁이 종료된 경우 수탁자는 제휴사업자에 대한 신탁고금의 반환청구권을 위탁자에게 양도하는 방법으로 신탁고금을 반환하기로 하며, 별지 6.과 같은 양식으로 반환청구권 양도 사실을 제휴사업자에게 통지하기로 한다.

제 14 조(신탁보수)

신탁보수는 위탁자가 신탁하는 고금 등의 종류에 따라 다음과 같이 구분하고, 위탁자는 신탁계약을 체결과 동시에 신탁고금의 종류에 해당하는 신탁보수를

수탁자에게 지급한다.

신탁고금의 종류	신탁보수
37.5g(1돈) 이상 ~ 37.5g(10돈) 이하	[]만원
37.5g 초과 ~ 100g이하	[]만원
100g초과	[]만원

제 15 조(소송수행)

- ① 신탁재산에 관한 소송이 제기되었거나 제기할 필요가 있는 경우 수탁자는 위탁자에게 이를 통지하고 위탁자와 협의하여 응소 또는 제소에 필요한 조치를 취할 수 있다.
- ② 제1항에 따른 소 제기 및 소송진행에 따른 소송대리인의 보수 및 소송과 관련된 비용(소송결과에 따른 판결금액 및 이에 대한 지연이자를 포함한다)은 제8조에 따라 처리한다.

제 16 조(비밀유지의무)

- ① 위탁자 및 수탁자는 상대방의 사전 동의없이 신탁계약의 체결과 이행 과정에서 알게 된 상대방에 관한 정보 및 신탁재산에 관한 정보를 제3자(비밀유지의무를 부담하는 각 당사자의 자문기관을 제외한다)에게 공개하여서는 아니된다.
- ② 제1항의 규정은 다음 각호의 정보에 관하여는 적용하지 아니한다.
 1. 일반에게 널리 알려진 정보
 2. 관련 법령 또는 법원이 정한 바에 의하여 그 공개가 요구되는 정보

제 17 조(신탁사무의 위임)

자본시장법 및 관련 법령에 의하여 허용되는 범위 내에서 수탁자는 신탁사무의 위임에 관한 계약을 체결하여 신탁계약에 의한 신탁사무 중 일정 업무를 위탁자 또는 제3자에게 위임할 수 있다. 본조에 따른 신탁사무 위임과 관련한 계약이 체결되는 경우 수탁자는 그 비용 및 보수를 신탁사무처리비용으로 지급하여야 한다.

제 18 조(통지방법)

- 수탁자는 신탁계약상 발송이 요구되는 위탁자에 대한 통지를 다음 각 호의 방법 중 위탁자와 사전에 협의한 방법으로 한다.
1. 위탁자가 수탁자에게 고지한 주소로 등기우편
 2. 위탁자가 수탁자에게 고지한 팩시밀리
 3. 위탁자가 수탁자에게 고지한 전자우편
 4. 위탁자가 수탁자에게 고지한 모바일

제 19 조(준거법)

- ① 신탁계약 및 그에 따른 위탁자 및 수탁자의 권리와 의무는 대한민국의 법령에 따라 규율되고 해석된다.
- ② 신탁계약의 내용은 법령에 위배되지 아니하도록 해석되어야 하며, 법원의



재판, 행정기관의 행정처분이나 신탁감독기관의 관련 지침과 지도, 관련 법령의 개폐 등에 부합하도록 당사자의 합의를 통해 변경될 수 있다.

20____년____월____일

제 20 조(관할법원)

이 약관에 의한 거래와 관련하여 발생한 분쟁에 대하여 수탁자와 위탁자 사이에 소송의 필요가 생긴 경우에는 그 관할법원은 「금융소비자 보호에 관한 법률」 제66조의2에 따라 방문판매 및 유선·무선·화상통신·컴퓨터 등 정보통신기술을 활용한 비대면 방식을 통한 금융상품 계약과 관련된 소는 제소 당시 위탁자 주소를, 주소가 없는 경우에는 거소를 관할하는 지방법원의 전속관할로 한다. 다만, 제소 당시 위탁자의 주소 또는 거소가 분명하지 아니한 경우 또는 본문에서 정한 방문판매 또는 비대면 방식을 통한 금융상품 계약에 해당하지 않는 경우의 관할법원은 「민사소송법」이 정한 바에 따른다.

신탁계약이 체결된 증거로서 위탁자 겸 수익자와 수탁자는 신탁계약서 2부를 작성하고 각자의 권한 있는 대표 또는 권한을 위임받은 자로 하여금 기명 날인 하도록 하여 각 당사자가 1부씩 보관한다.

위탁자 겸 수익자 _____ (인)

수탁자
주식회사 하나은행
지배인 _____ (인)

[별지 1] 신탁고금 목록

번호	품목	수량(개)	중량(g)	보안봉투 식별번호
1				
2				
3				
4				

[별지 2] 신탁고금 인수 확인서

신탁고금 인수목록

번호	품목	수량(개)	중량(g)	보안봉투 식별번호
1				
2				
3				
4				

인계자 및 인수자는 상기 고금을 정히 인계·인수하였음을 확인합니다.

인계자
위탁자 _____ (인)

인수자
수탁자
주식회사 하나은행
은행장 _____
위 지배인 _____ (인)

[별지 3] 보안봉투 인수인계서

번호	보안봉투 식별번호	인수인계 일시
1		
2		
3		
4		

인계자 및 인수자는 상기 보안봉투를 정히 인계·인수하였음을 확인합니다.

20____년____월____일

인계자
수탁자
주식회사 하나은행
은행장 _____
위 지배인 _____ (인) 대리인 :

인수자
제휴사업자
주식회사 한국금융거래소디지털에셋
_____ (인)

[별지 4] 보안봉투(반환용) 인수인계서

번호	보안봉투(반환용) 식별번호	신탁 신규시 사용된 보안봉투 식별번호*	인수인계 일시
1			
2			
3			
4			

*수탁자가 제휴사업자에게 인계한 당초 보안봉투의 식별번호
인계자 및 인수자는 상기 보안봉투(반환용)을 정히 인계·인수하였음을 확인합니다.

20____년____월____일



인계자
제휴사업자
주식회사 한국금거래소디지털에셋
_____(인)
대리인:

인수자
수탁자
주식회사 하나은행
은행장 _____
위 지배인 _____(인)

[별지 5] 신탁고금 반환 확인서

신탁고금 반환목록

번호	품목	수량(개)	중량(g)	보안봉투(반환용) 식별번호
1				
2				
3				
4				

인계자 및 인수자는 상기 고금을 정히 인계·인수하였음을 확인합니다.

20____년____월____일

인계자
수탁자
주식회사 하나은행
은행장 _____
위 지배인 _____(인)

인수자
위탁자 _____(인)

[별지 6] 고금 반환청구권 양도 통지

수신 : 주식회사 한국금거래소디지털에셋
1. 이 반환청구권 양도 통지는 당행이 귀사에 교부한 고금 {20____년____
월____일 자 보안봉투 인수인계서상 보안봉투(아래 표 기재)에 수납된 고금
(이하 “본건 고금”)}의 반환청구권과 관련됩니다.

번호	보안봉투 식별번호	인수인계 일시
1		

2. 위탁자로서 _____(이하 “위탁자”)와 수탁자로서 당행 사
이에 본건 고금에 관하여 체결된 고금 보관신탁계약이 종료됨에 따라 당행
은 당행이 귀사에 대하여 보유하고 있는 본건 고금의 반환청구권을 20____
년____월____일자로 위탁자에게 양도하였음을 통지합니다.

20____년____월____일

주식회사 하나은행
은행장 _____
위 지배인 _____(인)

